

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용자지원을 위한
「서울신용보증재단」 출연 동의안
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4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금천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 회부
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9월 4일)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‘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용자 지원사업’ 추진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¹⁾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출연기관 : 서울신용보증재단

1)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출연내용 : 관내 소기업·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재원 확보
 - ※ 시중은행 협력으로 출연예산(17억→4억) 절감 효과
- 출 연 금 : 400,000천원(구 출연분)
- 필 요 성
 - 경기침체(고물가, 고금리)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유통 및 경영위기 극복 지원
 - 저신용 및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·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지원으로 정책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4. 참고사항

- 금천구 출연 현황
 - 1차 출연 : 2009. 4. 8. (5억원, 보증한도 50억원)
 - 2차 출연 : 2013. 7. 1. (1억원, 보증한도 10억원)
 - 3차 출연 : 2020. 6. 23. ~ 12. 24. (40억원, 보증한도 560억원)
- ① 24억, 보증한도 360억원, 2020. 6월 ~ 2023. 11월
 - ※ 「금천형 특별신용보증대출」 보증한도 360억원에 행안부 추가보증 배당액 60억원 추가하여 총 420억원 보증규모로 운영

연 도	2020	2021	2022	2023	누 계
대출건수	633	583	312	255	1,783
대출규모(백만원)	14,674	13,378	7,685	5,999	41,736

- ② 16억, 보증한도 200억원, 2021년 한시적 사업

※ 「금천형 특별신용보증대출」 출연금 40억 中 16억원을 변경하여 서울시

소상공인 4무 무이자융자 사업 시-구 공동 출연금으로 사용)

대출은행	신한	하나	우리	총 계
대출건수	346	251	399	996
대출규모(백만원)	6,904	4,977	7,900	19,781

- 금천형 소상공인²⁾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 개요
 - 보증규모 : 212.5억원 (출연금 17억×12.5배³⁾)
 - 출연규모 : 17억원 (금천구 - 은행연계 출연)
 - ※ 금천구(4억) + 우리은행(10억) + 하나은행(3억)
 - 보증대상 : 관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기업·소상공인
 - 보증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 - 대출조건 :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(변동금리)
 - 구 특별보증 혜택 : 대출금리 무이자(최초 1년 한시적 지원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 뿐만아니라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고, 소상공인의 특별보증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

2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,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을 갖춘 자

3) 운용배수 : 지자체 출연금 대비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준 금액의 비율로 2013년 신규 협약부터 12.5배(법정운용 배수 15배를 초과할 수 없고 운용배수가 너무 높으면 보증 부실 발생 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)

- 안 제5조의2에서는 ‘사회재난’만을 규정한 것을 ‘안전재난’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,
- 안 제5조의3에서는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게 법령 명칭에 홑낫표(「」)를 사용함.
-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.
-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3고 현상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영업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-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